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21

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고동진·박덕흠·서명옥

서범수 · 박준태 · 엄태영

서일준 · 김소희 · 박정훈

박성훈 · 김성원 · 박충권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주요 기기·설비·구조물의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.

이로 인해 원자력 산업의 특성상 주요 기기·설비의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건설허가 전 미리 발주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허가 전 발주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, 원전 건설 일정의 효율적 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한 충분한 제 작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필요한 주요 기기·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,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

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10조제7항).

법률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적건설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필요한 주요 기기·설비 또는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건설허가) ① ~ ⑥ (생	제10조(건설허가) ① ~ ⑥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⑦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
	을 건설하려는 자는 제1항에
	따른 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
	이라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
	시설의 안정적 건설과 품질확
	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필요한
	<u>주요 기기·설비 또는 구조물</u>
	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
	<u>수 있다.</u>
<u>⑦</u> (생 략)	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